

서울고등법원 2017. 4. 28 선고 2016나205925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7. 4. 28 선고 2016나205925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22 선고 2013가합50910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피고, 항소인 F

변론 종결 2017. 4. 12.

판결 선고 2017. 4. 28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3가합50910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망 G과 피고 사이에 2012. 11. 2.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제8,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44,390,80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4,390,8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(제1심 공동피고들 중 주식회사 A, C, D, E는 자신들에 대한 제1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하지 않고 당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① 제1심 판결의 '이 법원'을 모두 '제1심 법원'으로, ② 제8쪽 제18행의 '을바 제4호증'을 '을바 제4, 22호증'으로, ③ 제9쪽 표의 연번 8에서의 'AF 토지'를 'AP 토지'로, ④ 제20쪽 제2행의 각 'AO'을 각 'G'으로, ⑤ 제21쪽 제3행의 '채권최고액 275,100,000원 및 390,000,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'를 '2006. 10. 26.자 채권최고액 275,100,000원 및 2009. 11. 27.자 채권최고액 390,000,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'로, ⑥ 제21쪽 제5, 9행의 각 'AF 토지'를 각 'AP 토지'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망 G이 자력을 회복하여 지금은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 변론종결 기일에서 주장을 철회하였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우진

판사송석봉

판사최은정